

- 구민이 참여하는 열린행정소통의 도시 • 사람이 중심에 서있는 교육복지도시 • 글로벌시대를 선도하는 창조도시
-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자족도시 • 삶의 품격을 높이는 문화·예술도시 • 자연친화 녹색성장을 주도하는 건강도시



연수구보

■ 구정 방향 ■

함께 가꿔요!

행복한 연수!

발행·편집인:연수구청장 / 발행처:인천광역시 연수구 / 주소: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호 (우)406-120 ☎ 810-7072 / FAX 810-7139

구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부록 제686호 2012. 4. 16.(월)

【규 칙】

- 인천광역시연수구규칙 제494호(인천광역시연수구위생업소행정처분경감기준에관한규칙 폐지규칙) 1

【고 시】

- 인천광역시연수구고시 제2012-35호(송도영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 (경미한사항 변경) 및 고시) 3
- 인천광역시연수구고시 제2012-36호(도로명주소 고시) 17
- 인천광역시연수구고시 제2012-37호(도로명주소 고시) 19

【공 고】

-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공고 제2012-5호(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1

○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공고 제2012-6호(인천광역시연수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25

○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공고 제2012-7호(인천광역시연수구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30

회 람							
--------	--	--	--	--	--	--	--

인천광역시연수구규칙(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인천광역시연수구 위생업소행정처분 경감기준에관한규칙 폐지규칙	☐ 폐지 이유 ○ 위생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시 경감기준은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공중위생업소에 대하여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이미 규정된 사항을 본 규칙에 재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폐지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인천광역시연수구위생업소행정처분경감기준에관한규칙은 폐지함

인천광역시연수구위생업소행정처분경감기준에관한규칙 폐지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고남석

2012. 4. 16.

인천광역시연수구 규칙 제494호

인천광역시연수구위생업소행정처분경감기준에관한규칙 폐지규칙

인천광역시연수구위생업소행정처분경감기준에관한규칙은 폐지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송도영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경미한사항 변경) 및 고시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96-4번지 일대 송도영남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하여 인천광역시고시 제2009-91호(2009.03.30) 및 제2010-260호(2010.09.13)로 지정한 송도영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을 변경(경미한사항 변경)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건축과(☎032-810-7746)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4월 16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 송도영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1. 정비사업의 명칭 : 송도영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변경 없음)
2. 정비구역 및 면적 (변경)
 - 정비구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정비구역명칭	위 치	면 적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송도영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96-4번지 일원	26,640.0	감) 30.9	26,609.1	-

○ 정비구역 결정(변경)사유서

구 분	위 치	면 적 (㎡)	비고
변경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96-4번지 일원	26,609.1	지적현황(분할)측량에 따른 면적오차 정정

3. 용도지역·지구계획 (변경)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26,640.0	감) 30.9	26,609.1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	26,640.0	감) 30.9	26,609.1	100.0	

○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 용도지역 결정선의 변경 없이 지적현황(분할) 측량 성과 반영에 따라 용도지역의 면적을 변경하고자 함

○ 용도지구 결정조서 (변경 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연장 (m)	폭 (m)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	미관 지구	일반 미관지구	연수구 청학동 96-4번지 일원	12,150㎡	810	15	99.9.2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1) 교통시설

가) 도로 (변경 없음)

결정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위 치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 별	번호	폭원 (m)			기점	종점			
기정	광로	3	6	40-4 3	주간선	12,495	신흥동 광1-1	논현동 시계	-	인고09-91 (2009.03.30)	-
기정	중로	3	4	12	보조 간선	84	소2-39	소2-3	-	인고09-91 (2009.03.30)	-
기정	소로	2	21	8	국지	79	옥련동 557-2	중3-54	-	인고09-91 (2009.03.30)	-
기정	중로	2	146	15	집산	168	광3-6	청학동 97-8	-	인고09-91 (2009.03.30)	-
기정	소로	2	32	8~12	국지	194	광3-6	청학동 327-47	-	인고09-91 (2009.03.30)	-
기정	소로	2	33	8	국지	58	청학동 98	중3-55	-	인고09-91 (2009.03.30)	-
기정	소로	2	39	8~12	국지	481	중3-4	중3-4	-	인고09-91 (2009.03.30)	-
기정	중로	3	77	12	집산	83	소2-39	소2-32	-	인고09-91 (2009.03.30)	-
기정	소로	3	30	6	국지	55	광3-6	소2-32	-	인고09-91 (2009.03.30)	-

나) 주차장 (변경)

○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①	주차장	연수구 청학동 97-1번지 일대	160.0-	증) 0.2	160.2	인고09-91 (2009.03.30)	조성후 무상귀속

○ 주차장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①	주차장	·변경 ·면적: 160.2㎡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결과에 따른 선형 변경 및 지적현황(분할) 측량성 과 반영(면적 변경)

2) 공간시설

가) 공원 (변경)

○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	공원	소공원	연수구 청학동 96-18번지 일대	1,040.0	감) 0.7	1,039.3	인고09-91호 (2009.03.30)	조성후 무상귀속

○ 공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공원	·변경 ·면적: 1,039.3㎡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결과(주차장선 형조정)에 따른 선형 변경 및 지적현황 (분할) 측량성과 반영(면적 변경)

5.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변경)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정규모 이상으로 계획

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비 고
			기정	변경	
신설	관리 사무소	108동 지하1층	60.00	302.41	「주택건설기준에 관한규정」 제28조
	주민 공동시설	101동 지하1층	지하 654.00	지하 475.38	상동 55조
	경 로 당	101동 1층	120.00	93.17	상동 55조
	보육시설	101동 1층	200.00	121.79	상동 55조
	문 고	101동 지하1층	50.00	106.66	상동 55조
	어린이 놀이터	101동과 102동, 105동과 106동 사이	800.00	778.00	상동 46조
	휴게시설	106동 남측	1개소	2개소	상동 29조
	경비실	생태연결통로(2개소)	22.80	지하 24.34 지상 24.41	-
	주민운동시설		-	-	상동 53조

6.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등에 관한 계획(변경)

결정 구분	구역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m)		
	명 칭	면적(㎡)	명 칭	면적(㎡)						
변경	송도 영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26,609.1	기 정	획 지 1	21,774.5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8.0% 이하	240%이하 (250%이하)	90m이하 (평균18층이하)	
				획 지 8	160.0	노외 주차장시설	60.0% 이하	250%이하	4층이하	
			변 경	획 지 1	21,680.8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8.0% 이하	240%이하 (250%이하)	90m이하 (평균18층이하)	
				획 지 8	160.2	노외 주차장시설	60.0% 이하	250%이하	4층이하	
			구 분				계 획 내 용			
			획지 1	지정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획지 8	지정용도	·주차장법 제2조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주차전용 건축물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주차장법 제2조제5의2호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 건축물의 경우 주차장 이외의 용도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를 85㎡이하로 건설										
건축선에 관한 계획	구 분	위 치		계획내용	계획목표							
	건축 한계선	광로3-6, 소로2-30, 소로2-32 소로2-39, 중로3-77, 중로3-4		도로경계선으로부터 3m	개방감 확보							
		청학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경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완화적용기준	·용적률 인센티브											
	- 완화적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210% + 공공시설부지제공 21.49% + 지하주차장계획 10% + 탑상형주택계획 5%											
	- 정비계획용적률: 240.00%이하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최대10%추가) - 250%이하)											
	※ 지역건설업체 참여비율별 용적률 인센티브 추가 기준											
	<table><tr><td>지역건설업체 참 여 비 율</td><td>40%이상</td><td>30%이상 40%미만</td><td>20%이상 30%미만</td></tr><tr><td>용적률 인센티브</td><td>10%</td><td>5%</td><td>3%</td></tr></table>					지역건설업체 참 여 비 율	40%이상	30%이상 40%미만	20%이상 30%미만	용적률 인센티브	10%	5%
지역건설업체 참 여 비 율	40%이상	30%이상 40%미만	20%이상 30%미만									
용적률 인센티브	10%	5%	3%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 (주택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등) 규정에 의한 소형주 택 건설은 법적상한용적률 250%이하												

7.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1) 도시경관에 관한 계획

○ 도시경관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도 시 경 관	■ 조망경관계획 ◦주변지역과의 조화를 꾀하기 위하여 적정한 층수계획을 하여 전체적인 스카이라인 제고 ◦탑상형 위주의 배치를 통해 통경축(Visual Corridor)을 확보 하여 대상지 인접 자연경관의 훼손을 최소화 ■ 색채계획 ◦건축, 의상 등 생활의 모든 색채는 자연에서 추출하여 사용하여 항상 자연과 조화된 색채의 조화고려 ◦주변 건축물과 자연, 생활소재들은 어색하지 않고 조화롭고 우리의 정서에 맞는 이미지가 형성될 수 있음 ◦가로별 지역적 특성이 반영될 수 있는 주조색을 선정하여 개성적인 경관 형성 ◦색의 특성과 색채가 주는 느낌을 감안하고 적절한 배합을 통해 조화로우름을 형성할 수 있도록 비렌의 색채조화원리를 적용하도록 함 ■ 가로경관 ◦근린생활시설 주변에 활발한 가로활동을 도모하고 단지 주 보행 진입부를 오픈스페이스로 조성하여 보행의 흐름과 연계된 휴식공간을 제공함 ◦지형적 고저차가 발생하는 부분에는 경관적으로 우수하도록 시멘트나 블록 소재의 옹벽은 지양하고, 조경석을 이용하여 석축을 조성하며, 다양한 디자인의 스트리트 퍼니처를 설치하여 단조로움 방지 ◦자칫 위압감을 느낄 수 있는 건축물의 저층부는 재질 및 입면 표현을 특화시켜 가로 경관 및 보행환경의 증진을 도모하도록 계획	

○ 옥외광고물 설치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광고물의 위치	◦부지 외부로의 광고물 돌출 및 이동식 간판의 사용 금지 ◦지주이용간판에의 집약설치 권장	
광고물의 수량	◦업소당 표시할 수 있는 총 수량은 건물부착간판(가로형 간판, 돌출 간판)1개, 지주형 종합간판 1개로 제한(총2개 이내)	
광고물의 색채	◦채도가 높은색(원색계열)은 간판 바탕으로 사용 금지 ◦형광도로 및 야광도로 바탕면 사용금지	
광고물의 설치형태	◦가로형간판의 경우 입체형(권장사항)으로 부착하며 한 건물의 동일층에 설치하는 간판의 세로폭은 동일하게 표시 ◦가로형 간판의 두께는 20cm 이내로 제한 ◦돌출형간판은 돌출길이가 100cm 이내, 간판 두께 50cm 이내로 제한하며 그 높이는 3m 이상이 되도록 제한	
광고물의 종류	◦가로형 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 간판으로 제한	

2) 환경보전에 관한 계획

구분	항목	환 경 성 예 측	저 감 방 안
자연환경	기상·기후및에너지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단독주택과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재건축사업으로 특성상 영향 정도가 경미하여 자연 및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기상변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 ·아파트 건축에 따른 세대수 증가로 인한 난방 및 취사용 에너지 추가 소비가 예상 ·운영시 난방 및 취사연료로 도시가스를 사용할 계획임	·기상·기후 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며,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토양포장율을 감소시키고 단지에 적합한 조경계획을 수립·시행함 ·사업지구내 난방 및 취사용 연료로 청정연료(도시가스)로 계획 ·에너지 절약형 단지 건축물 설계기법을 최대한 반영토록 하여 청정연료 및 에너지 절감방안에 적합한 대책을 마련토록 할 계획임
	지형	·완만한 경사지형을 이루고 있으며, 지하주차장 등의 계획으로 인한 터파기공사 등 토목공사로 인한 사토 발생이 예상 ·북측에 폭원 40m의 비류길과 접하고, 서측, 남측, 동측에 폭원 8m의 도로가 사업부지 경계선상에 위치하므로 전반적인 주변 여건을 고려한 적정 토공 및 계획고를 계획함	·사면발생을 최소화, 무리한 정지계획을 지양함과 동시에 자연지형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형변화를 최소화 ·강우로 인한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가배수로 및 부직포, 비닐 등을 활용하여 토사유실을 방지
	경관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주요 경관요소로는 사업부지내 공동주택 및 일반상가건물 분포 ·주변경관도 마찬가지로 일반주거지 및 공동주택지 등이 산재하는 일반적인 도심지 경관을 형성	·쾌적한 주거시설의 도입으로 도심기능 회복 및 도시미관 증진 효과 창출 ·경관적으로 유사한 지역의 시각적인 연속성과 경관적 흐름이 단절되지 않도록 계획
생활환경	대기질	·공사장비 가동시 배기가스 배출 : 공사시 투입장비의 가동에 의한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발생이 예상	·세륜·세차시설의 설치 및 살수 : 공사장 입구부에 운영하여 비산먼지의 발생을 최소화 할 계획임

구분	항목	환경성예측	저감방안
생활환경	대기질	·공사장비 이동에 의한 비산먼지 발생 : 각종 공사장비의 작업 수행 및 이동 등에 의해 비산먼지 발생이 예상	·이동식 방진망(가설방음판넬 상단 1.0~2.0m)을 설치·운영하여 주변지역에의 영향을 최소화 ·차량속도는 안전율을 고려하여 20km/hr로 규제, 차량덮개 사용으로 먼지발생을 최소화
	수질	·강우강도는 197.97mm/hr로 조사됨(하수도 시설기준, 1998, 환경부) ·우수유출량은 0.439m³/sec ·사업시행 전·후의 용수공급량 추정은 인천광역시의 1인당 1일 급수량 355ℓ를 적용하여 산정한 결과 475.35m³/일로 산정됨 ·상기 원단위를 적용한 발생오수량은 437.32m³/일로 예측되어 적절한 저감대책의 수립이 요구	·우천시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공사 중인 사면에는 대형비닐을 덮어 토사유출을 사전에 저감할 수 있도록 조치 ·기존의 하수계통과 사업계획, 공사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망 및 관로계획을 수립할 계획임 ·신규개발지역으로 수질오염, 유지관리, 처리결과 등을 감안하여 분류식 우수배제방식으로 계획 ·하수도 관리의 과학화를 위하여 하수관거의 CCTV 점검·확인조사 제도 및 하수도 시설 정보화 계획에 일조
	폐기물	·주택철거 및 부지정지 공사시 각종 투입장비의 윤활유 교체시 폐유 발생 ·기존 건축물을 해체하여 발생하는 폐기물은 철거방법, 사전 선별유무, 선별방법 등에 따라 다양하여 재건축을 감안할 때 해체계획, 해체공법, 해체폐기물에 대한 계획 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 ·사업시행전과 사업시행후의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시행전 총 1,332.24kg/일에서 시행후 총 1,392.56kg/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건축물의 신축·철거 시, 발생하는 건축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에 따라 재활용, 매립처분 및 위탁처리 할 계획 ·이동성이 없는 장비나 정비소까지의 운행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에는 폐유저장소를 설치하여 수집·보관,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할 계획임 ·발생별 분리수거 후 인천광역시 쓰레기 처리계획에 의거 전량 처리할 계획임

구분	항목	환경성예측	저감방안
생활환경	소음·진동	·소음예측결과, 79.1~82.6 dB(A)로써 예측지점 3개소 모두 생활소음규제기준(공사장 65dB(A))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남 ·진동예측결과, 합성진동도는 54.3dB(V)이며, 장비로부터 15m이격된 위치에서 예측소음도가 49.4dB(V)로 생활진동규제기준 65dB(V)를 만족하는 것으로 예측됨	·소음원과 수음점 사이에 설치되어 소음의 전파경로를 변화시켜 소음을 저감시키는 전형적인 대책인 가설방음판넬을 설치(설치위치 : 지구경계선, 높이 : 7m, 설치제원 : 고정식)하며, 정온시설과 인접하여 공사시 작업시간을 조정 ·사업부지경계 전체에 공사시 소음·진동의 영향저감(송도초등학교, 동보아파트, 남측 주거지) 및 보도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도모(동측 도로)하기 위하여 가설방음판넬의 설치를 계획하였으며, 가설방음판넬 설치 및 작업시간 조정결과 생활소음규제기준을 만족함

3)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분	내용
교통	·사업구역 내 대부분의 도로는 보차분리가 되어있지 않아, 보행자의 통행이 안전하지 못한 실정 ·또한, 주차장의 부족으로 도로변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통행할 수 있는 도로폭이 협소하므로, 응급시 비상차량의 진입이 어려움 ·따라서, 보차분리, 가감속차로 확보, 지상부 차량동선의 최소화를 위해 단지내 차량동선의 지하로 유도하여 보행의 안전성과 쾌적성 유지 ·재해발생시 소방용차량 등의 비상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비상차량 진입동선계획을 구축하여 재난발생시 또는 응급상황에 대처가 용이하도록 체계적인 교통체계 구상
화재 및 지진	·안전진단 결과 조건부재건축 판정을 받은 송도영남아파트단지는 재난에 취약한 구조의 건축물이 다수 위치하고 있어, 지진 등의 재해발생시 붕괴 등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이 있음 ·따라서 이를 철거하고, 철근콘크리트의 벽식구조로 건설을 하며, 내화재료 사용 및 내진설계를 통한 설계시행이 필요
홍수	·사업구역은 비교적 평탄한 지형으로 홍수의 위험은 없는 것으로 조사됨 ·하지만 공원 및 휴게시설 등을 우수침투시설로 설치하여 집중호우로 발생할 수 있는 홍수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함 ·또한 현재 설치되어 있는 우수관망의 수리능력검토를 통해 집중호우시 역류에 의한 침수를 예방할 수 있도록 우수관망계획을 수립

8.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공사시 소음·진동	◦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지침서」(2007.1 환경부)에 준하여 공사를 시행 ◦ 소음원과 수음점 사이에 설치되어 소음의 전파경로를 변화시켜 소음을 저감시키는 전형적인 대책인 가설방음판넬 설치 (송도초등학교주변 7m) ◦ 정온시설과 인접하여 공사시 작업시간을 조정	
통학로	◦ 송도초등학교 통학로 주변 어린이 보호를 위해 기존도로를 확폭(4m)하여 어린이 보행의 안전성을 확보 ◦ 어린이 보호구역(School zone)을 설치하여 도로표지, 도로 반사경, 과속방지시설, 경고등, 가드웬스 등의 도로부속물을 설치함 - 유색포장 : L = 279m - 안전펜스 : L = 150m - 도로표지 및 안전 표지판,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 설치 ◦ 단지 내 보행자도로를 확보하여 단지 내 및 주변지역 학생들에게 최단거리의 안전한 통학로 제공	

9. 세입자 주거대책 (변경:신설)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의2,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의2,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의거 주거이전비를 보상

10.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변경 없음)

- 정비구역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3년 이내의 범위 안에 사업시행 인가

11. 정비사업의 시행방법(변경 없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관리 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

12.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존치	개수	철거(이주)	철거(신축)	
단독 및 다가구주택	-	-	-	12동	
다세대 및 공동주택	-	-	-	19동	
복합시설	-	-	-	4동	
근린생활시설	-	-	-	2동	
계	-	-	-	37동	

13.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변경)

-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참조

14.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구 분	위 치	계 획 내 용	계획목표	비고
공동주택 건축한계선	광로3-6, 소로2-32, 소로2-39	도로경계선으로부터 3m	◦개방감 확보	
	청학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경계와 기존현황도로	인접대지경계선으로 부터 3m		

15.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수(변경)

구 분	현 황	계 획		비 고
		기정	변경	
인 구 수	1,281 인	1,320 인	1,339 인	세대당 2.71인/세대
세 대 수	433 세대	487 세대	494 세대	

※ 건축계획 (층수, 외관, 세대수)은 사업시행인가 등 추후 절차 시 변경될 수 있음

16.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결과(변경 없음)

○ “7.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참조

17.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변경)

획 지 번 호	면적(m ²)			위치	비 고
	기 정	증(감)	변 경		
1	21,774.5	감 93.7	21,680.8	연수구 청학동 96-4번지 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용지
2	1,040.0	감 0.7	1,039.3	96-18번지 일대	공원용지
3	1,054.3	감 21.3	1,033.0	95-1번지 일대	도로용지
4	1,427.0	증 21.5	1,448.5	324-4번지 일대	도로용지
5	340.7	증 1.6	342.3	325-5번지 일대	도로용지
6	163.0	증 0.1	163.1	319-5번지 일대	도로용지
7	680.5	증 61.4	741.9	319-8번지 일대	도로용지
8	160.0	증 0.2	160.2	97-1번지 일대	노외주차장

18. 소형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 규정에 의한 소형주택 건설은
동법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건설 공급

19.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변경 없음)

○ 수목현황

구분	수종	규격	수량	이식 가치	구분	수종	규격	수량	이식 가치
1	감나무	3.5H×R10	8	상	12	느티나무	4H×R10	5	하
2	감나무	4H×R12	15	중	13	느티나무	5H×R15	4	상
3	감나무	4.5H×R15	3	상	14	느티나무	3.5H×R12	3	상
4	감나무	5H×R15	6	하	15	측백나무	4H×R15	3	중
5	은행나무	3.5H×R10	20	하	16	향나무	2H×R7	5	하
6	은행나무	4H×R13	15	상	17	향나무	2.5H×R8	5	중
7	은행나무	5H×R18	24	중	18	향나무	3H×R10	3	상
8	은행나무	6H×R22	21	중	19	사철나무	5H×R18	2	중
9	단풍나무	3H×R7	13	상	20	매화나무	4.5H×R16	3	하
10	단풍나무	3.5H×R7	19	중	21	매화나무	5H×R17	4	중
11	단풍나무	4.5×R15	22	중	22	매화나무	5.5H×R18	5	상
조경수목 총계 약 208주 중 이식가치 “상” 54주									

○ 수목활용계획

구분	수목 활용 계획
현황 분석	·사업지구 내에 보호수(향나무1주)가 위치하고 있으며, 관할 관청의 허가를 얻은 후 사업부지 인근에 위치한 향나무공원에 보호수(향나무1주)를 이식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계획함 ·사업지구내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지에 소규모 조경부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소량의 조경수가 식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사업지구의 녹지자연도는 시가지·나대지(DGN 1등급) 지역인 것으로 사정됨 ·본 사업지구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지역에 식재된 조경수목은 은행나무, 감나무, 단풍나무, 향나무, 매화나무, 느티나무 등 약 총 208주가 분포함
향후 계획	·사업지구내 존재하는 수목은 약 총 208주가 식재되어 있으며, 차후 건축계획 수립 시 양호수종을 선별하여 가치가 있는 수종은 최대한 조경수 등으로 재활용 할 수 있도록 조치 필요함 ·재건축사업에 따른 주변지역과 조화된 조경계획 수립 필요함 ·사업부지내 보호수 이식은 전문처리업체에 위탁할 예정임

20. 관련서류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연수구청 건축과에 관계서류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관련도면 게재 생략)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 04. 16.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벤처로100번길 6 외 1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변경)사유	도 로 명 고 시 일	도 로 명 부 여 사 유
		별 도 열 략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청 민원지적과(☎810-7986 ~ 7988)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2. 04. 16.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2013. 12. 31.까지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도로명주소 부여고시조서

NO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 동 11-72, 11-73	인천광역시 연수구 벤처로100번길 6	신축	2010-06-24	벤처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100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 기되는 도로	송도 오토 산업 연구소
2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21-10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68-11	신축	2009-05-14	해돋이공원을 지나는 도로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 04. 16.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42번길 64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도 로 명 고 시 일	도 로 명 부 여 사 유
		별 도 열 략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청 민원지적과(☎810-7986~8)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2. 04. 16.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2013. 12. 31.까지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도로명주소 부여고시조서

NO	증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5-5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42번길 64	미부여	2011-01-31	컨벤시아대로의 시작지점에서 약4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명선초등학교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공고 2012 - 5호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13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자유로운 의사표시를 위하여 무기명 투표 규정을 신설하고, 지방재정 계획 수립을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단서규정 삭제함.

2. 주요내용

- 제6조(회의) 내용 중 “④ 심사의결은 무기명 투표로 결정한다.”를 신설한다.
- 제7조(안건배부) 내용 중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라는 단서를 삭제한다.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제출처

- 주소 : (우 406-723)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동춘동923-5)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의회사무과

- 전화번호 : 032)810-5326 (FAX 810-5319)

4. 붙임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심사의결은 무기명 투표로 결정한다.

제7조 중 단서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회의) ①~③ (생략) <u>(신 설)</u> 제7조(안전배부) 위원회에 부의 할 안전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 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u>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u>	제6조(회의) ①~③ (현행과 같음) <u>④ 심사의결은 무기명 투표로 결정 한다.</u> 제7조(안전배부) ----- ----- ----- ----- . <u>(단서 삭제)</u>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공고 2012 - 6호

인천광역시연수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연수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13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 용역결과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하고자함.

2. 주요내용

-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 용역결과에 대한 활용도를 높여 지방재정이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 되도록 하기 위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제출처

- 주소 : (우 406-723)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동춘동923-5)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의회사무과
- 전화번호 : 032)810-5326 (FAX 810-5319)

4. 붙임 인천광역시연수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연수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가 시행하는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 용역결과에 대한 활용도를 높여 지방재정이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역”이란 타인의 위탁에 의하여 고도의 전문성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기획·연구·설계·분석·타당성조사·시험·감리·평가·자문·지도·사업관리 등 일련의 역무를 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술연구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하며 “기술용역”이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에서 규정한 엔지니어링 활동과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에 **규정한 건설기술용역**을 말한다.
3. “공무원용역참여제”란 기획능력과 실무능력을 충분히 갖춘 공무원이 용역을 맡은 기관·업체의 용역수행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제시는 물론, 필요에 따라 사전 상호 약정된 범위내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각 개별법령에서 용역의 수행방법을 따로 규정한 용역을 제외한 학술용역 및 정보기술 관련용역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사에 관한 사항
2. 용역 사업계획, 과업내용, 수행기간, 용역비등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용역의 기대효과와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4. 기타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심의대상 등) ① 사전 심의대상 용역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술용역 : 용역비 2천만원 이상 사업
 2. 정보기술 관련 용역 : 용역비 3천만원 이상 사업
- ②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필수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는 용역은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용역발주의 사전검토 등) ① 용역과제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의 중복이나 유사용역시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국내 타 자치단체에서 과거 시행한 적이 있는 유사용역 사례
 2. 각종 연구소 등에 보존되어 있는 용역보고서 등
- ② 제1항의 용역사례를 검토한 결과는 위원회 자료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업무책임자 2명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연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과 학술용역 및 정보기술 관련 용역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7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 중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하여야 한다.

1. 사망,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연2회 이상 불참 또는 개인적 사유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개인적 이득을 취하는 등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고 위원으로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에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통지하고 회의자료는 늦어도 회의개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총괄부서의 실, 과장이 되고 서기는 용역업무 총괄부서의 담당이 된다.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비밀유지) ① 용역과제 심의업무에 관여한 위원 및 그 밖의 종사자는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② 용역과제 심사 시 심사표는 무기명으로 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연수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예산편성 등) ① 구청장은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용역사무에 관한 예산을 의회에 승인요구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6조(용역결과 관리) ① 구청장은 용역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성과품을 보관·관리하고, 용역성과가 시책개발 및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용역의 활용실태 보고서를 매년 제2차 정례회 이전에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예산이 편성된 용역과제는 이 조례에 따라 심의한 것으로 본다.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공고 2012 - 7호

인천광역시연수구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연수구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13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이 2012. 1. 17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라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 영업시간 제한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하고
 - 의무휴업일은 전통시장 등 중소유통과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개정 취지에 적절하게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매월 2일로,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을 지정하도록 하고,

- 지역상권의 보호를 위하여 연수구에 본점을 둔 대규모점포등의 의무휴업일은 예외로 하도록 함.
- 한편,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은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제외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제출처

- 주소 : (우 406-723)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동춘동923-5)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의회사무과
- 전화번호 : 032)810-5326 (FAX 810-5319)

4. 붙임 『인천광역시연수구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연수구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구청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연수구내에 있는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휴업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은 제외한다.

1. 영업시간 제한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한다.
2. 의무휴업일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항에 따라 매월 2일로 하며,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한다. 다만, 연수구에 본점을 둔 대규모점포등은 예외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5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구청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연수구내에 있는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휴업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은 제외한다.		제15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구청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연수구내에 있는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휴업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은 제외한다. 1. 영업시간 제한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한다. 2. 의무휴업일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항에 따라 매월 2일로 하며,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한다. 다만, 연수구에 본점을 둔 대규모점포등은 예외로 한다.